2. 우리나라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를 말할 것 같으면 기자(箕子)의 팔조목(八條目)•은 자세한 문헌의 고증이 없습니다. 삼국(三國)이 정립(鼎立)하여 싸울 때는 혼란하여 이렇다 할 정치와 교화가 알려진 게 없으며, 고려 500년은 온통 비바람 속에 어두웠습니다.

우리 왕조에 이르러 태조께서 국운을 여시고 세종께서 그 제도를 지켜나가면서 비로소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사용하였고, 그 성종 때에 이르러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간행하였으며, 그 후 때에 맞춰 법을 만들어 이를 『대전속록(大典續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성군에서 성군으로 대가 이어져 서로 다른 것이 없었어야 하는데도, 『경제육전』을 쓰기도 하고 『경국대전』을 쓰기도 하다가 『대전속록』을 첨가한 것은 시의를 따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임금에게 의견을 올려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법의 집행이 막히지 않아 백성이 편이 쉬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는 정치가 황폐하고 혼란하여 씀씀이가 너무 사치스럽

- 팔조목(八條目) :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는 기자(箕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敎法)을 만들어 인민을 교화시켰다고 전하고 있다.
- 『경제육전(經濟六典)』 : 조선시대 최초의 공적인 법전으로 태조 때 만들었다.
- 『경국대전(經國大典)』 : 세조 때 시작하여 성종 7년(1476년)에 완성한 조선의 기본 법전.
- 『대전속록(大典續錄)』 : 『경국대전』을 반포하고 반행(頒行)한 뒤 새로운 수교(受敎)와 『경국대전』 시행에 있어 필요한 규정을 수집 편찬한 법전.

고 번거로웠는데, 선왕들의 공법(貢法)•을 고쳐 아래에서 덜어 위에다 보태는 것을 날마다 일삼았습니다. 중종반정 때의 정치는 마땅히 옛것을 회복해야 했는데도, 중종 초년에 국사를 담당한 신하들은 무식한 공신들뿐이었습니다. 그 뒤 기묘제현(己卯諸賢)•이 조금 큰일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참소로 참화를 입어 피와 살이 가루가 되었고, 계속해 일어난 을사사화•는 기묘사화보다 더 참혹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사림(士林)•은 경계하고 무서워서 뒤돌아보고, 숨을 죽이면서 구차하게 살아남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히 국사(國事)를 입에 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권세를 쥔 간신의 무리가 마음 놓고 제멋대로 하여,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구법(舊法)이라 하여 준수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방해되는 것은 신법(新法)이라 여겨 없애버렸습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을 요약하면 백성을 수탈하여 자기를 살찌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형세가 날로 쪼그라들고 나라의 근본이 날로 손상되어 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가 털끝만큼이라도 마음을 썼겠습니까?

- 공법(貢法) : 조선 전기의 토지에 대한 세금 제도.
- 기묘제현(己卯諸賢) : 심정(沈貞) · 남곤(南袞) 등이 일으킨 기묘사화 때 화를 당한 조광조를 비롯한 선비들을 말함.
- 을사사화 : 1545년(명종 원년) 윤원형(尹元衡) 일파 소윤(小尹)이 윤임(尹任) 일파 대윤(大尹)을 숙청하면서 사림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
- 사림(士林) : 선비 사회.
- 한단지보(邯鄲之步) : 한단의 걸음걸이라는 뜻으로, 제 분수를 잊고 무턱대고 남을 흉내 내다가 이것저것 다 잃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이제 다행히도 성스럽고 밝은 임금이 계셔 학문에 마음을 두시고 민생을 생각하시니, 때에 맞춰 법을 마련하여 한 세상을 바로 고쳐 구제할 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한단지보(邯鄲之步)•를 우려하여 경장(更張)•할 생각이 적으십니다. 그래서 신하 된 자들은 남을 논할 적에는 왕안석(王安石)• 같은 환란이 생길까 염려하고, 제 몸을 아끼는 입장에서는 기묘년과 같은 패배가 있을까 염려하여, 감히 경장(更張)이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험 삼아 지금의 정치 상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법(貢法)은 연산군 때에 백성을 괴롭히던 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지키고 있고, 관리를 골라 뽑는 일은 권세 있는 간신이 청탁하는 규례(規例)•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글재주인 문예(文藝)만 앞세우고 덕행을 뒷전으로 밀어내, 덕행이 높은 자를 끝내 작은 벼슬에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벌(門閥)•만을 중시하고 어진 인재를 경시하여 하찮은 가문의 출신들은 그 능력을 펴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승지(承旨)•가 어전에 들어가 아뢰지 못하기 때문에 주상께서 가까이 모시는 신

- 경장(更張) : 폐단이 생겨 해이해진 정치 · 경제 · 사회 · 군사 등을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 다시 새롭게 개혁하는 것.
- 왕안석(王安石) : 1021~1086년. 북송의 개혁 정치가이자 문학가. 앞에 나옴.
- 공법(貢法) : 조선 전기의 토지에 대한 세금 제도. 앞에 나옴.
- 규례(規例) : 규칙과 관례.
- 문벌(門閥) :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지위.
- 승지(承旨) :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승정원의 도승지 · 좌승지 · 우승지 · 좌부승지 · 우부승지 · 동부승지의 총칭.

하들을 멀리하고 환관(宦官)과 친근하게 되며, 시종(侍從)•이 조정의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학에 조예가 깊은 신하의 의견은 경시되고 천박한 속된 논의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한 관직에 오래 머물지 않고 청현직(淸顯職)•에 올라 두루 거치는 것을 영달로 여기고, 직무를 나누어 맡지 않고 조사(曹司)•에게 전담시키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폐습과 잘못된 규례(規例)들은 하나하나 자세히 아뢰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폐단은 기묘사화 때가 아니면 반드시 을사사화 때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사를 논의하는 자들은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온 법도로 여기어 감히 경장(更張)하자는 의견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시의(時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왕(聖王)이 만든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변통(變通)•하는 현명한 자손이 없으면, 마침내는 반드시 폐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은 대성인으로서 노(魯)나라를 다스렸지만, 뒷날 노나라가 쇠퇴해질 때를 대비해 미리 떨치고 일어날 방책을 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공(太公)•은 대현인으로서 제(齊)나라를 다스렸지만,

- 시종(侍從) : 국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국사를 처리하던 신하의 총칭, 홍문관의 관원과 예문관의 검열(檢閱), 승정원의 주서(注書) 등을 통틀어 시종신이라 하였음.
- 청현직(淸顯職) : 청직(淸職)과 현직(顯職)으로 청직은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이 맡는 관직을 말하고 현직은 높고 중요한 벼슬을 말하며, 모두 당시 인기 있는 직책.
- 조사(曹司) : 벼슬에 갓 임명되어 일의 경험이 적은 사람을 일컫는 말. 신입 또는 말단 관리.

뒷날 제나라에서 일어날 왕위찬탈의 싹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나라와 노나라에 현명한 후손이 나와서 선대 임금들이 남긴 뜻을 잘 따르면서도 법규에만 얽매이지 않았다면, 어찌 쇠퇴하고 혼란스런 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대 임금들께서도 입법하신 당초에는 본디 그 법이 주도면밀하였으나, 200년이 지나오는 동안 시대도 변하고 일도 바뀌어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변통(變通)할 수는 있습니다. 하물며 그 뒤에 만들어진 잘못된 규례(規例)이겠습니까? 다급하게 개혁하여 마치 불속에서 타는 자를 구하고 물속에 빠진 자를 구해 주듯 해야 할 것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막다른 끝에 이르면 변화하고 변화하면 통한다." 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시어 변통할 것을 생각하십시오.

- 변통(變通) : 어떤 제도나 방법을 때와 상황에 맞게 고쳐 시행하는 개혁. 앞에 나옴.
- 주공(周公) : 주나라 무왕의 아들이자 성왕의 숙부로 어린 성왕을 섭정하여 주나라의 문물을 완비한 인물. 천하통일 후 노나라에 봉해졌음.
- 태공(太公) : 주나라 초기의 정치가이며 본명은 여상(呂尙). 무왕의 책사이며 훗날 제나라에 봉해짐.

해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간략한 역사와 폐단의 개혁을 논하고 있다. 기자조선부터 고려 때까지는 다루지 않고, 조선초기부터 당시까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요지는 선대 임금들이 법을 만들 당시에는 상세하고 두루 적용되는 것이지만, 시대가 지나고 일이 바뀌면 폐단이 생기므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는 조선이 건국한지 200년쯤 되는 때이므로 폐단이 없을 수 없고, 특히 오랜 사화(士禍)로 인해 폐단이 가중되었다는 인식이다.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예로서 역대 왕들이 여러 법전을 잇달아 편찬한 것을 들었고, 아무리 훌륭한 조상을 두었더라도 후손이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의 운명이 쇠퇴할 수밖에 없음을 논하였다.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은 다만 군사력의 부족만이 아니라, 개혁을 하지 않아 야기된 나라의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것이 어찌 조선시대에만 국한된 문제이겠는가? 지금 우리는 빈부격차로 부가 일부 지배층에게만 집중되고, 가난한 자들은 자식을 낳아 키울 능력이 없어 혼인을 기피하며, 젊은이들에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 많은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편안히 놀고먹는 풍조가 만연하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생겼을까? 지도층은 모범을 보이기는 고사하고, 그들이 소유한 재산은 일반 백성들의 평균치를 훨씬 능가한다. 게다가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정의의 존재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며, 다수의 언론보도에서 공정성을 눈곱만큼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은 소질을 계발하며 생각하는 인간으로 길러주기 보다는 오로지 점수 따는 기계로 전락시켰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다. 힘없는 사람이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었고, 권력의 심장부로 갈수록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 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어쩔 것인가? 다 망하자는 것인가? 조선후기 개혁을 반대하던 권문세가의 양반가문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는데 권문세족이 무슨 소용이 되었던가?

한문 원전 음미하기

雖聖王立法, 若無賢孫有以變通, 則終必有弊.
수 성 왕 입 법 약 무 현 손 유 이 변 통 즉 종 필 유 폐

故周公, 大聖也, 治魯而不能振後日寖微之勢.
고 주 공 대 성 야 치 노 이 불 능 진 후 일 침 미 지 세

太公, 大賢也, 治齊而不能謁後日之簒弑之萌.
태 공 대 현 야 치 제 이 불 능 알 후 일 지 찬 시 지 맹

雖: 비록 ~하더라도/聖王: 성군/立法: 법을 만듦/若~則~: 만약 ~한다면 ~하다/無: 없다/賢孫: 현명한 자손/以: 어조사/變通: 본문 참조/終: 마침내/必: 반드시/有弊: 폐단이 생기다/周公: 본문 참조/大聖: 큰 성인/魯: 춘추전국시대의 나라이름/不能: ~할 수 없다/振: 떨쳐 일으키다/寖微: 가라앉아 미미해지다/勢: 기세, 형세/太公: 본문 참조/大賢: 대 현인/齊: 춘추전국시대의 나라이름/謁: 막다/簒弑: 왕위를 빼앗고 왕을 죽임/萌: 싹

해석

비록 성왕(聖王)이 만든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변통(變通)하는 현명한 자손이 없으면, 마침내는 반드시 폐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은 대성인으로서 노(魯)나라를 다스렸지만, 뒷날 노나라가 쇠퇴해지는 형세를 떨쳐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태공(太公)은 대 현인으로서 제(齊)나라를 다스렸지만, 뒷날 제나라에서 일어날 왕위찬탈의 싹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我國祖宗立法之初, 固極周詳, 而年垂二百,
아국조종입법지초 고극주상 이년수이백

時變事易, 不無弊端, 猶可變通. 況後日謬規.
시변사역 불무폐단 유가변통 황후일류규

汲汲改革, 當如救焚拯溺者乎. 傳曰, 窮則變,
급급개혁 당여구분증익자호 전왈 궁즉변

變則通, 伏願殿下留念, 思所以變通焉.
변즉통 복원전하유념 사소이변통언

我國: 우리나라/祖宗: 임금의 조상/立法: 법을 만듦/初 : 처음/固: 본디/極: 매우/周祥: 두루 상세함/垂: 드리우다/時變: 시대가 변하다/事易: 일이 바뀌다/不無: 없지 않다/弊端: 폐단/猶: 오히려/可變通: 변통할 수 있다/況: 하물며/謬規: 잘못된 규정, 법도/汲汲: 다급한 모양/改革: 개혁/當: 마땅히, ~해야 하다/如: 마치 ~하듯/救焚拯溺: 불에서 구하고 물에서 건지다/者: ~것/乎: 어조사/傳: 전하다. 여기서는 『주역』의 「계사전」을 말함/曰: 말하다/窮: 막히다/則: ~하면을 뜻하는 어조사/變: 변하다/通: 통하다/伏: 엎드리다. 여기서는 삼가다의 뜻/願: 원하다/殿下: 왕에 대한 존칭/留念: 유념/思: 생각하다/所以: ~할 것/變通: 본문 참조/焉: 어조사

해석

우리나라 선대 임금들께서 입법하신 당초에는 본디 그 법이 매우 주도면밀하였으나, 200년이 지나오는 동안 시대도 변하고 일도 바뀌어 폐단이 없지 않지만, 오히려 변통(變通)할 수는 있습니다. 하물며 그 뒤에 만들어진 잘못된 규례(規例)이겠습니까? 다급하게 개혁하여 마치 불속에서 타는 자를 구하고 물속에 빠진 자를 구해

주듯 해야 할 것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막다른 끝에 이르면 변화하고 변화하면 통한다." 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시어 변통할 것을 생각하십시오.